

의안
번호

39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진선아의원 외 18명

나. 의안번호 : 제398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6.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이와 관련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폭주가 일어날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워,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는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됨.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

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다. 화재 예방 계획수립,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5조)
- 라. 화재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0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른 차량 증가로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 및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사건은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으로 차량 80여대가 불에 타고, 배관 파열·누수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정전, 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2024년 10월 기준 성북구 충전시설 설치현황〉

계	공공건물 등			공중이용 시 설	공동주택
	소 계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2,659개소	232개소	191개소	41개소	141개소	2,286개소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이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시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는 구청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수립 시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안 제5조(안전시설의 지원)는 구청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감지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전시설 지원절차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며, 지원시설에 대한 관계인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함.
- 안 제6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와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 화재 대응 매뉴얼을 교육·배포하도록 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등 구청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위험 감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등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화재대응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사료 됨.

- 다만, 안 제6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 화재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고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 제6조의 제목은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로 명시되어 있어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배포’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사료 됨.

〈수정안〉

현행	수정안
제6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마련된 화재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6조(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마련된 화재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고 배포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안 제8조의 제목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등’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수정안〉

현행	수정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